

「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수시-3차)

(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)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년 5월 30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5월 30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6월 4일

제27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선산출장소장 김 언 태

나. 제안이유

○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(축산과)

현 동물보호센터는 개인 승마장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어 시설 개보수등이 어렵고, 시설 규모도 현저히 작아 정상적인 동물보호소의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구미시 반려인구에 걸맞은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여 시민의 욕구 충족 및 동물보호복지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【취득재산】

□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

구분	동물보호센터 신축	유기동물 입양센터 신축	반려동물 실내외 놀이터 신축
위치	옥성면 구봉리 31-1번지 일원(시유지)		옥성면 구봉리 746-79번지 일원(시유지)
대상	연면적 1,134.84㎡ (지상1층 3개동)	연면적 200㎡ (지하1층 1개동)	연면적 1,000㎡ (지상2층)
사업기간	2021 ~ 2024년	2021 ~ 2025년	2021 ~ 2025년
총사업비	계 9,590백만원(국 900, 도 3,130, 시 5,560)		
	산출내역	3,590백만원 (국 600, 도 420, 시 2,570)	1,000백만원 (국 300, 도 210, 시 490)
기준가격	공사비 3,413 설계용역비 86 감리비 81 시설부대비 10	공사비 932 설계용역비 50 감리비 12 시설부대비 6	공사비 4,672 설계용역비 200 감리비 115 시설부대비 13
주요시설	사무동(사무실, 상담실, 교육장) 보호동(보호실, 진료실, 격리실) 창고(사료·약품 창고)	사무실, 보호실, 상담실 미용실, 훈련실 등	실내(사무실, 놀이터, 카페 등) 실외(놀이터, 산책로 등)

○ 추진상황

- 부지선정위원회 개최 : '21. 10월
- 부지 확정 공고 : '21. 11월
-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: '22. 5월
- 동물보호센터 건축허가수리 : '23. 3월
- 유기동물 입양센터 공모사업 선정 : '23. 7월
- 동물보호센터 착공 : '23. 10월

○ 향후추진계획

- 도시계획시설결정(문화공원)추진 등 : '24. 7월

- 유기동물 입양센터 실시설계 등 : '24. 7월
- 동물보호센터 준공 : '24. 8월
- 놀이터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 이행 : '24. 11월
- 유기동물 입양센터 착공 : '25. 1월
- 실내·외 놀이터 착공 : '25. 5월
- 입양센터 준공 : '25. 7월
- 놀이터 준공 : '25. 12월

라. 근거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, 같은법 시행령 제38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, 같은법 시행령 제7조

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수시-3차)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², 백만원)

구 분		건수	수량	금액
취득	계	3	2,334.84	9,590
	1.매입			
	2.교환 으로 취득			
	3.기타 취득	3	2,334.84	9,590

취득 및 처분 재산목록(총괄)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², 백만원)

연번	재 산 의 표 시			추정 가액	취득 시기	사 유	소유자	비고
	구분	소 재 지	수량					
계			2,334.84	9,590				
1	건물	옥성면 구봉리 31-1일원	1,135	3,590	2024년	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 (동물보호센터)	구미시	신축
2	"	"	200	1,000	2025년	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 (유기동물 입양센터)	"	"
3	"	옥성면 구봉리 746-79일원	1,000	5,000	2025년	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 (반려동물 놀이터)	"	"

위 치 도

□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

○ 소재지 : 옥성면 구봉리 746-79번지 일원

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○ 본 관리계획안은

- 주요재산의 취득, 처분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의 건은 동물보호센터 신축, 유기동물 입양센터 신축, 반려동물 실내외 놀이터 신축 총 3건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임.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함.
- 그러나, 동물보호센터 신축과 유기동물 입양센터 신축의 건은 의회의 관리계획안 동의없이 예산을 수립하는 등 사전행정절차 미이행으로,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음.
- 또한, 유기동물 입양센터 신축과 반려동물 실내외 놀이터 신축의 건은 2024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

예산이 전액 삭감(유기동물입양센터 건립-6억8천만원/
반려동물 실내외 놀이터-8억)되는 등 사업 추진에
우려사항이 있었던 사업이므로 심사에 신중을 기해야
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
의결 누락은 명백한 행정절차 위반임.
추후, 예산 수립 시 관리계획안을
거치지 않은 사업은 집행기관과 의회
차원에서 예산 제출 자체가 불가능
하도록 시스템화 필요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